–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–
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조치 (주요내용)

[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]

	현행	변경(12.18.~)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	■ <**24시 중단**> 유흥시설	■ <**21시 중단**> - 유흥시설 등, 식당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 **목욕장업,** 실내체육시설 ■ <**22시 중단**> - 학원(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영화관·공연장, 카지노(내국인), 오락실, 멀티방, PC방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사적모임	■ **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** ■ (식당·카페) **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** 및 1인 이용 가능 (예) (수도권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·카페이용 가능	■ **전국 4인까지 가능** ■ (식당·카페) **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, 1인 단독** 이용만 가능 (예) (전국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·카페 이용 **불가**
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기준 (집회 포함)	■**99인까지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■ **100명 이상**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**499명까지 가능** * **500인 이상**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하에 시행	■**49인까지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■ **50명 이상**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**299명까지 가능** * **300인 이상**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,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
결혼식	<① **또는** ② **선택**> ① **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 → 250명까지 가능** ② **행사·집회 기준 준수** - **99인까지는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	<① **또는** ② **선택**> ①**미접종자49명 + 접종완료자201명 → 250명까지 가능** ② **행사·집회 기준 준수** - **49인까지는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**299명까지 가능**
돌잔치 장례식장	■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 * (모임행사기준) - **99인까지는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**100명이상**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**499명까지 가능**	■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 * (모임행사기준) - **49인까지는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**299명까지 가능**
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	• 제한 없음	■ **49인까지**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■ **50명 이상**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